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요	1
1. 세입·세출예산안	1
가. 세입예산안	1
나. 세출예산안	1
(1) 총 괄	1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3
(3) 사업 내역	3
(4) 성과계획서	4
(가) 임무와 비전	4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5
(5) 성인지예산	5
(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5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6
가. 2025년도 신규사업	6
나. 2024년도 완료사업	6

Ⅱ. 검토의견	7
1. 총괄 검토	7
가. 개요	7
나. 위원회 조사기한 및 존속기한에 종료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8
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잔여사건 처리에 위원회 차원의 노력 및 조사기간 연장 시 그에 따른 조치 필요	15
2. 진화위운영(1031-300)	18
가. 개요	18
나.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연구용역비 편성 적절성 논의 필요	19
다. 국외 현지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적정성 논의 필요	25
[별첨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29

문 의 처

02-6788-5343

I.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68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000만원(0.7%)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	%
계	16,749	16,749	16,869	120	0.7
o 일반회계	16,749	16,749	16,869	120	0.7
- 운영비(사업비)	3,429	3,429	3,266	△163	△4.8
- 인건비	6,520	6,520	6,811	291	4.5
- 기본경비	6,800	6,800	6,792	△8	△0.1

*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개로 단일구성됨.

내역별로 보면, 사업비는 1년 연장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21. 5. 27. ~ '25. 5. 26.)을 고려하여 위원회 대외 홍보 2억 3,400만원, 진실규명 조사 19억 7,500만원, 위원회 정리 1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종합보고서 발간, 기록물 이관, 사무실 철거를 위한 내역사업(위원회 정리)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는 위원회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연장 전 조사기간('21. 5. 27. ~ '24. 5. 26.)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연중 조사기간 종료에 대해 2023년도 대비 36억원($\Delta 51.2\%$)를 기감액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액($\Delta 4.8\%$)된 3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인건비는 직원의 경력 사항 반영 및 임금 평균 단가 상승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4.5%)된 6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본경비는 종합보고서 보고 기한(조사 종료 후 6개월 내)까지 위원회가 존속됨을 고려하여 8백만원이 감액($\Delta 0.1\%$)된 6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총 계		16,749	16,749	16,869	120	0.7
일반·지방행정(분야)		16,749	16,749	16,869	120	0.7
일반 행정 (부문)	소 계	16,749	16,749	16,869	120	0.7
	진실화해위원회운영	3,429	3,429	3,266	△163	△4.8
	진실화해위원회행정지원	13,320	13,320	13,603	283	2.1

(3) 사업 내역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총 계		16,749	16,749	16,869	120	0.7
진화위운영		3,429	3,429	3,266	△163	△4.8
	진화위운영	3,429	3,429	3,266	△163	△4.8
진화wein건비		6,520	6,520	6,811	291	4.5
	진화wein건비	6,520	6,520	6,811	291	4.5
진화위기본경비		6,800	6,800	6,792	△8	△0.1
	진화위기본경비	6,800	6,800	6,792	△8	△0.1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로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민족 정통성 확립,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관련 진실규명
- 일제강점기 이후 과거사정리법 시행시까지의 해외동포사 관련 진실규명
- 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관련 진실규명
- 8.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관련 진실규명
- 8.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관련 진실규명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역사적 중요사건 관련 진실규명

☐ 비전(Vision)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민족 정통성 확립,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달성

-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진실화해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를 설정하였음.

해당 프로그램 목표에 설정된 단위사업은 1개임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1	1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I.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I-1 진실화해위원회운영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5) 성인지예산

진실화해위원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진실화해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5년도 신규사업

진실화해위원회의 2025년도 신규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나. 2024년도 완료사업

진실화해위원회의 2024년도 완료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한 및 존속기한이 2025년 5월 26일 및 11월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로 예정된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잔여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 진실규명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추가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은 168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7억 4,9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0.7%) 증액 편성되었음.
- 인건비는 처우개선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 65억 2,000만원 대비 2억 9,100만원(4.5%) 증액된 6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화해위원회 관련 사업 연구비를 순감하여 편성하는 등 2024년도 예산 68억원 대비 800만원(0.1%) 감액된 6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¹⁾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 34억 2,900만원 대비 1억 6,300만원(4.8%) 감액된 3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계	16,749	16,749	16,869	120	0.7
일반회계	16,749	16,479	16,869	120	0.7
운영비(사업비)	3,429	3,429	3,266	△163	△4.8
인건비	6,520	6,520	6,811	291	4.5
기본경비	6,800	6,800	6,792	△8	△0.1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나. 위원회의 조사기한 및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 ☐ 2025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경우 세부 항목별 일부 증감은 있으나, 2025년말까지의 소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2항²⁾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중

료될 경우 6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동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이 존속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진화위 인건비 및 진화위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인건비가 12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고, 회의참석수당과 반기별 발간하는 보고서 발간 비용 모두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기한 및 존속기한과 이에 따른 실질적 소요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먼저, 진화위 인건비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정무직·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를 모두 12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4년 대비 2억 9,100만원(4.5%)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진화위 인건비 예산 편성 내역>

2025년 예산요구안	
예산	산출내역
6,811,000천원	○ 보수(110-01) : 4,937,272천원 가. 봉급(3,680,904천원) • 장관(급) : 12,111천원×1명×12월×1.034=150,273천원 • 차관(급) : 11,762천원×2명×12월×1.034=291,886천원 • 별정직고위공무원 : 9,099천원×3명×12월×1.07×1.034=362,429천원 • 별정직4급상당 : 6,452천원×7명×12월×1.07×1.034=599,598천원 • 별정직5급상당 : 5,045천원×19명×12월×1.07×1.034=1,272,587천원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획의 부여) ① (생략).

②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2025년 예산요구안	
예산	산출내역
	• 별정직6급상당 : $3,251\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12\text{월} \times 1.034 = 1,533,001\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2,517\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12\text{월} \times 1.034 = 343,488\text{천원}$ • 조정재원 : $\triangle 872,358\text{천원}$ 나. 정근수당(80,875천원) • 별정직6급상당 : $3,251\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1\text{월} \times 0.53 \times 1.034 = 67,708\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2,517\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1\text{월} \times 0.46 \times 1.034 = 13,167\text{천원}$ 다. 성과상여금(206,877천원) • 별정직6급상당 : $3,972\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1\text{월} \times 1.10 = 166,017\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3,377\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1\text{월} \times 1.10 = 40,860\text{천원}$ 라. 정액수당(59,313천원) • 정근수당가산금(25,593천원) - 별정직6급상당 : $45\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12\text{월} = 20,313\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40\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12\text{월} = 5,280\text{천원}$ • 가족수당(33,720천원) - 장관(급) : $40\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480\text{천원}$ - 차관(급) : $70\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840\text{천원}$ - 별정직고위공무원 : $140\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1,680\text{천원}$ - 별정직4급상당 : $80\text{천원} \times 5\text{명} \times 12\text{개월} = 4,800\text{천원}$ - 별정직5급상당 : $70\text{천원} \times 13\text{명} \times 12\text{개월} = 10,920\text{천원}$ - 별정직6급상당 : $70\text{천원} \times 17\text{명} \times 12\text{개월} = 14,280\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30\text{천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개월} = 720\text{천원}$ 마. 초과근무수당(325,774천원) • 별정직5급상당 : $15\text{천원} \times 19\text{명} \times 12\text{월} \times 35\text{시간} \times 1.034 = 124,257\text{천원}$ • 별정직6급상당 : $13\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12\text{월} \times 27\text{시간} \times 1.034 = 163,512\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12\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12\text{월} \times 24\text{시간} \times 1.034 = 38,005\text{천원}$ 바. 정액급식비(136,080천원) • 장관(급) : $140\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월} = 1,680\text{천원}$ • 차관(급) : $140\text{천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월} = 3,360\text{천원}$ • 별정직고위공무원 : $140\text{천원} \times 3\text{명} \times 12\text{월} = 5,040\text{천원}$ • 별정직4급상당 : $140\text{천원} \times 7\text{명} \times 12\text{월} = 11,760\text{천원}$ • 별정직5급상당 : $140\text{천원} \times 19\text{명} \times 12\text{월} = 31,920\text{천원}$ • 별정직6급상당 : $140\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12\text{월} = 63,840\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140\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12\text{월} = 18,480\text{천원}$ 사. 명절휴가비(187,649천원) • 별정직6급상당 : $3,251\text{천원} \times 38\text{명} \times 2\text{회} \times 0.60 \times 1.034 = 153,300\text{천원}$ • 별정직7급상당 : $2,517\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2\text{회} \times 0.60 \times 1.034 = 34,349\text{천원}$ 아. 직급보조비(259,800천원) • 장관(급) : $1,240\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월} = 14,880\text{천원}$ • 차관(급) : $950\text{천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월} = 22,800\text{천원}$ • 별정직고위공무원 : $650\text{천원} \times 3\text{명} \times 12\text{월} = 23,400\text{천원}$ • 별정직4급상당 : $400\text{천원} \times 7\text{명} \times 12\text{월} = 33,600\text{천원}$

2025년 예산요구안	
예산	산출내역
	• 별정직5급상당 : 250천원×19명×12월=57,000천원 • 별정직6급상당 : 185천원×38명×12월=84,360천원 • 별정직7급상당 : 180천원×11명×12월=23,760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1,831,431천원 가. 봉급(1,575,645천원) • 전문임기제(나) : 5,636천원×7명×12월×1.034=489,550천원 • 전문임기제(다) : 4,607천원×19명×12월×1.034=1,086,095천원 나. 정액수당(10,560천원) • 가족수당 - 전문임기제(나) : 40천원×2명×12월=960천원 - 전문임기제(다) : 80천원×10명×12월=9,600천원 다. 초과근무수당(122,715천원) • 전문임기제(나) : 15천원×7명×12월×29시간×1.034=37,931천원 • 전문임기제(다) : 13천원×19명×12월×28시간×1.034=84,784천원 라. 정액급식비(43,680천원) • 전문임기제(나) : 140천원×7명×12월=11,760천원 • 전문임기제(다) : 140천원×19명×12월=31,920천원 마. 직급보조비(63,180천원) • 전문임기제(나) : 250천원×7명×12월=21,000천원 • 전문임기제(다) : 185천원×19명×12월=42,180천원 바. 연가보상비(15,651천원) • 전문임기제(나) : 5,636천원×7명×5일×0.86×0.033×0.84×1.034=4,863천원 • 전문임기제(다) : 4,607천원×19명×5일×0.86×0.033×0.84×1.034=10,788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42,297천원 가. 별정직고위공무원 : 9,099천원×3명×5일×0.86×0.033×0.78×1.034=3,124천원 나. 별정직4급상당 : 6,452천원×7명×5일×0.86×0.033×0.78×1.034=5,169천원 다. 별정직5급상당 : 5,045천원×19명×5일×0.86×0.033×0.84×1.034=11,814천원 라. 별정직6급상당 : 3,251천원×38명×5일×0.86×0.033×1.034=18,128천원 마. 별정직7급상당 : 2,517천원×11명×5일×0.86×0.033×1.034=4,062천원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그러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11월 26일
 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11개월분의 임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더욱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안 편성 시 사무보조 상용임금에 대해서는 1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일관된 기준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바, 진화위인건비 예산 편성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진화위기본경비 사업 내 사무보조 상용임금 편성내역>

2025년 예산요구안	
예산	산출내역
774,620천원	○ 상용임금(110-03) : 774,620천원 가. 기본급 : 2,367,717원×23명×11월=599,032천원 나. 초과근무수당 : 19,810원×20시간×23명×11월=100,239천원 다. 연차수당 : 90,864원×23명×7일=14,629천원 라. 정액급식비 : 140,000원×23명×11월=35,420천원 마. 명절상여금 : 550,000원×23명×2회=25,300천원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다음으로, 진화위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안전심의비와 사회적 합의 포럼 용역비, 조사보고서 발간 비용 등의 실소요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화위기본경비 사업의 위원회 회의 운영 내역 사업에 1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회의 참석수당과 안전심의비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하반기 2회 개최를 기준으로 포럼 주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반기 2회 발간을 기준으로 조사보고서 발간 비용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진화위기본경비 사업 내 위원회 회의 운영, 보고서 발간 편성 내역>

2025년 예산요구안		
내역사업	예산	산출내역
위원회 회의 운영	265,55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16,600천원 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5,800천원) - 비상임위원 : 200천원×6명×2회×11월=26,400천원 - 자문위원 : 200천원×20명×3회=12,000천원 - 소위원회위원 : 200천원×6명×2회×11월=26,400천원 - 화해위원 : 200천원×5명×8회=8,000천원 - 전문위원 : 200천원×15명×11회=33,000천원 나. 위원회 회의 안건심의비 (105,800천원) - 비상임위원 : 200천원×6명×2회×11월=26,400천원 - 자문위원 : 200천원×20명×3회=12,000천원 - 소위원회위원 : 200천원×6명×2회×11회=26,400천원 - 화해위원 : 200천원×5명×8회=8,000천원 - 전문위원 : 200천원×15명×11회=33,000천원 다. 화해위원회 관련 사업 (5,000천원) - 전국 위령제 근조화환 등 : 100천원×50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0,000천원 가. 화해위원회 관련 사업 - 과거사 진실규명과 사회적 합의 관련 포럼 등 : 15,000천원×2회=3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955천원 가. 위원회 회의 관련 업무협의 경비 - 위원회 : 30천원×9명×2회×11월=5,940천원 - 자문위원회 : 30천원×42명×4회=5,040천원 - 소위원회 : 30천원×8명×3회×11월=7,920천원 - 계수조정 : 55천원
보고서 발간	4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0,000천원 가. 조사보고서 발간 : 20,000천원×2회=40,000천원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그런데,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심의, 사회적 합의 포럼 용역, 조사보고서 발간 등은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원회의 조사기한이 5월 26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이들 예산액은 5개월분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한 및 존속기한이 2025년 5월 26일 및 11월 26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조사기한 및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잔여사건 처리에
위원회 차원의 노력 및 조사기간 연장 시 그에 따른 조치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으로 20,679건의 진실규명 사건이 접수되어 6,622건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간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처리 속도(39개월간 14,009건 월평균 약 359건)를 감안할 때, 2025년 5월 26일까지 조사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임으로, 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명, '24. 9. 25. 기준)

구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검토 중	상정 중	조사 개시	직권 조사	사전 조사	진실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
계	20,246	20,679	19	15	6,622	7	9	7,298	745	86	3,942	1,938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129	131	-	1	30	1	-	20	-	6	61	12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9,957	10,028	1	1	4,526	1	-	2,986	394	16	682	1,421
인권침해·조 작의혹·확정 판결사건	2,889	3,255	16	13	1,123	3	9	1,509	4	23	418	137

구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검토 중	상정 중	조사 개시	직권 조사	사전 조사	진실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	4,060	2	-	686	2	-	2,355	347	41	297	332
역사적 중요한 사건	202	216	-	-	179	-	-	26	-	-	8	3
3·15의거 사건	492	493	-	-	73	-	-	402	-	-	1	17
기타	2,692	2,496	-	-	5						2,475	16

* 배정건수: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으로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 기타: 취하 및 여순사건 이관 사건 등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물리적인 조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어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 조사기간 내에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로 예정된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잔여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 진실규명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추가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

(2024년 10월 31일 기준)

구분	의안번호	제안자	내 용
1	2200537	박정의원 등 13인	1.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관련 사항 추가 2. <u>진실규명 신청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u>
2	2202473	복기왕의원 등 44인	1. <u>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u> 2. 진실화해재단 설립 근거 마련 3.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 신설 4.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위령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2202978	이훈기의원 등 17인	1. <u>진실규명 신청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u> 2. 위원회 구성 확대 3.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 4.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5.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4	2203569	양부남의원 등 12인	1. <u>진실규명 신청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u> 2. 소멸시효 연장 근거 신설 3.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함

2. 진화위운영(1031-300)

- 기존 발굴사업의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시점 및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업무여비 편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적정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진화위운영’ 사업은 진실규명 결정 및 피해자와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대외홍보’ 사업과 피해자·증인·참고인 면담, 현장 및 실태조사 등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진실규명 조사’ 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34억 2,900만원 대비 1억 6,300만원(4.8%) 감액된 3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진화위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진화위운영	3,429	3,266	△163	△4.8
위원회 대외홍보	468	234	△234	△50.0
진실규명 조사	2,961	1,975	△986	△33.3
위원회 정리	-	1,057	1,057	순증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나.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절성 논의 필요

- 본 세부사업의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국가차원의 유해 발굴을 통해 한국전쟁기 집단희생 사건 등에 의한 희생자 피해실태 파악과 증거를 확보하여 진상규명 및 유족 해원(解冤)·화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일반연구비(260-01목) 집행을 통한 용역 발주 방식으로 수행됨.
- 2025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도 예산 3억 원 대비 7,150만원(23.8%) 감액된 2억 2,85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실시한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37개의 발굴가능지와 45개의 잠재적 발굴가능지 선정)³⁾를 바탕으로 가해주체, 사건의 유형, 발생지역, 희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결을 통해 매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유해발굴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8개 신규 발굴지 모두 9월 하순 이후 발굴 작업에 착공하였고, 그 중 4개소의 유해발굴 사업은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개소는 2024년도에 들어서야

3)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밭굴 작업에 착공하였음.

<2023년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실적>

유해발굴지	관련사건	추진경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37-1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기간	'23.9.21.~10.25.
		결과	치아 207점, 유품 57점 발굴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44, 653, 883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0.30.~11.24.
		결과	유해 22구, 유품 207점 발굴
충남 서산시 갈산동 176-4	충남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2.18.~'24.1.12.
		결과	유해 9구, 유품 67점 발굴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예산 국민보도연맹사건	기간	'23.10.12.~10.17.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5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2.03.~22.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
전북 군산시 신관동 군산대 공대 2호관	군산 적대세력 희생사건	기간	'24.1.5.~31.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녹슨철제,군용전선확인)
경북 울진군 울진면 고성리 산87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1.19~'24.3.30.
		결과	유해 3구, 유품 100점 발굴
삼척 근덕면 상맹방리 산7	삼척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4.3.13.~3.22.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
5개 지역 8개소		치아 207점, 유해 34구, 유품 431점 발굴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는 토지소유주의 승낙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산림보호구역 고시해제 심의 등 토지 사용에 관한 행정절차 경유의 문제로 유해발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체되었다고 설명함.

□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2024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 2023년에 이월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신규 밭굴지에 대한 밭굴

작업 착공이 7월 및 10월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는데 2024년에 완료된 유해발굴 사업의 발굴지는 4곳에 불과하고, 2곳의 유해발굴지는 현장조사 진행 중이며, 5곳의 유해발굴지는 사전 현장조사는 완료하였으나 발굴 작업이 착공 전으로 이 5곳의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과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2024년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실적>

(2024. 10. 31. 기준)

유해발굴지	관련사건	추진경과	
전남 영광군 흥농읍 진덕리 산 41	적대세력 희생사건	기간	'24.7.25.~10.11.
		결과	유해 10구, 유품 8점 발굴
전남 영광군 흥농읍 진덕리 산 290-2	적대세력 희생사건	기간	'24.7.25.~10.11.
		결과	유해 2구, 유품 4점 발굴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 168	형무소 재소자, 보도연맹 희생사건	기간	'24.10.1.~10.11.
		결과	유해, 유품 미확인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 172-1	형무소 재소자, 보도연맹 희생사건	기간	'24.10.1.~10.11.
		결과	유해 41구, 유품 201점 발굴, 유해매장 추정 구덩이 5개소 확인
대전 동구 낭월동 11-18	형무소 재소자, 보도연맹 희생사건	기간	'24.10.7.~10.31.
		결과	유해 약 20구, 유품 약 270점 발굴
대전 동구 낭월동 11-20	형무소 재소자, 보도연맹 희생사건	기간	'24.10.7.~10.31.
		결과	없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3-18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결과	사전 현장조사 완료
충남 논산시 성동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결과	사전 현장조사 완료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산154-2	보도연맹희생사건	기간	
		결과	사전 현장조사 완료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산154-3	보도연맹희생사건	기간	
		결과	사전 현장조사 완료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산157	보도연맹희생사건	기간	
		결과	사전 현장조사 완료
6개 지역 11개소		유해 73구, 유품 483점 발굴, 유해매장추정 구덩이 5개소 확인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2024년도 예산 3억원 대비 7,150만원(23.8%) 감액된 2억 2,850만원을 편성하여 우선발굴대상지 37개소 중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 중 1개소에 대한 발굴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그간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5년도에도 전년도 이월사업과 신규 발굴사업의 병행 추진으로 집행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발굴대상지 37개소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건명	우선발굴대상지	발굴현황	비고
1	군경관련 민간인희생사건	서울 강북구 우이동 338 일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2	김포부역형의	경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491-39	-	유족회 발굴 미희망
3		경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산10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김포시 주관 유해발굴
4	삼척부역형의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7	위원회 자체('23년)	-
5	강화(강화도, 석모 도, 주문도) 부역형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산190	'24년 예비 대상지	문화재청(보수적)
6	청주형무소 재소자 (도장골)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산22(1매장지)/ 651(2매장지)	'24년 예비 대상지	유족회의 발굴 희망여부 재확인 필요
7	단양곡계굴 미군폭격사건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6-8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22년)	51구 발굴
8	충북 국민보도연맹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19-1	-	월전리 군립묘지로 이장/ 유족회 발굴 미희망
9		충북 충주시 호암동 749-3(1매장지)/ 749-4(2매장지)	위원회 자체('22년)	-
10	연기 국민보도연맹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11	'24년 예비 대상지	'23대상지, 토지소유주 사용승인거부 *토지사용료 요구
11	대전형무소 재소자	대전 동구 낭월동 산4-1	'24년 예비 대상지	

구분	사건명	우선발굴대상지	발굴현황	비고
12	홍성 국민보도연맹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80-1 (용봉산 광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지자체 조사결과,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산 84-2번지로 변경 → 시굴 실시 (‘24년 추가소요제기)
13	홍성 국민보도연맹/ 홍성적대세력/ 홍성부역혐의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319 (결성국민학교 인근)		
14	서산태안 부역혐의	충남 서산시 갈산동 176-4(갈산동 교통호)	위원회 자체('22년)	-
15	예산 국민보도연맹	충남 예산군 신석리 16-49, 16-29	위원회 자체('23년)	-
16	아산 부역혐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96-4(새지기2)	위원회 자체('22년)	-
17		충남 아산 배방읍 공수리 산110(성재산방공호)	위원회 자체('22, '23년)	-
18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231-2(동막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19	당진 부역혐의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2(전파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4년)	-
20	공주 적대세력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33-7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21	대구 국민보도연맹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90-1	토지사용승인 거절('23년)	시멘트도로(발굴불가) /교란확인(연도별 위성사진)
22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89-6	위원회 자체('22년)	-
23	경산코발트광산	경북 경산시 평산동 산40-12 일대	· 1기 진화위 (‘07, ‘08, ‘09년 발굴) · 자체 수습('22년) · 지자체 수습('23년)	-
24	김천 형무소재소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68(돌고개)	‘24년 대상지	‘23대상지, 토지사용미승인
25	진주 국민보도연맹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산177-1, 산174	위원회 자체('22년)	-
26	마산 국민보도연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산24	-	9구 매장
27	여순사건	전남 여수시 만흥동 산271-7	-	알수없음. * 여순위원회
28	구례_여순사건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 151	-	기 수습된 지역 * 여순위원회
29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328-6	-	

구분	사건명	우선발굴대상지	발굴현황	비고
30	함평11사단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73-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31	전남 국민보도연맹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산58-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32	불갑산지역 민간인희생	전남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158-2	-	토지사용 승인 추진중
33	불갑산지역 민간인희생	전남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산28-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34	해남 적대세력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3-18	-	1구 매장
35	장흥 적대세력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548	-	기 유해수습 지역
36	신안 적대세력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1503-5번지 일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23년)	-
37	선감학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	위원회 자체('22,'23년)	'24년 경기도 전면발굴예정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더욱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조직으로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6개월간 종합 보고서 작성을 거쳐 2025년 11월 26일까지 존속하게 될 예정으로, 2025년 5월 내에 유해발굴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보다 기존 발굴 사업의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
- 따라서, 기존 발굴사업의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 국외 현지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적정성 논의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에 있는 ‘집단희생 사건 등 조사’ 및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단위사업에 국외업무여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부터 ‘유네스코 주최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국제회의 주제발표’, ‘몽골국가회복위원회 방문 및 과거사 국제토론회’,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관련 현지조사’, ‘재일교포 인권침해 사건 관련 현지조사’, ‘재일교포 북송 사건 현지조사’ 등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해 왔으며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2~2024년 진화위운영 사업 내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유형	목적	집행액
2022	국외출장	유네스코(UNESCO) 주최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국제회의 주제 발표	4,245
	국외출장	몽골국가회복위원회 방문 및 과거사 국제토론회, 양국간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사례 및 조사 방법론 공유 등	7,831
2023	외빈초청	위원회 초청 몽골국가회복위원회 내방	4,109
	국외출장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관련 현지조사	30,246
	국외출장	재일교포 인권침해 사건 현지조사	3,118
	국외출장	재일교포 북송사건 현지조사	14,107
	국외출장	재일교포 인권침해 사건 현지조사	4,727
2024	국외출장	재일교포 인권침해 사건 현지조사	8,530
	국외출장	한·폴란드 과거사 진실 규명 경험 공유를 통한 K-진실 화해모델 정립	26,189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위원회의 조사기간 활동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진화위운영 사업 내 국외업무여비를 2024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는데(2024년 초),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연장 전 조사기간(2021.5.27. ~ 2024.5.26.)이 기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연중 조사 종료를 감안하여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업무여비를 2023년 8,100만원 대비 2,700만원 감액(33.3%)하여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과 2024년 예산의 대상 기간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의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재 위원회에 접수된 잔여사건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역량을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잔여사건 처리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2024년도와 동일한 액수의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 2023년 진실규명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업무여비 예산액·집행액 및 불용액은 각각 8,100만원·5,600만원 및 2,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였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 국외업무여비 예산액 및 집행액은 5,400만원 및 2,5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였으며, 잔여 국외여비 2,900만원은 11~12월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2024년도의 집행률 부진과 더불어 진실화해위원회는 한·폴란드 과거사 진실 규명 경험 공유를 통한 K-진실화해모델 정립 목적으로 2,600만원의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였는데, 위원회 대외홍보 내역사업에 편성된 900만원의 국외여비로는 경비가 모자라 진실규명조사 내역사업 내에 편성된 1,700만원의 국외여비를 혼용 집행하였음.

- 진실규명조사 내역사업 내 1,700만원의 국외여비가 내역변경이나 조정 없이 위원회 대외홍보 내역사업 목적으로 추가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2024년 진화위운영 사업 내 진실규명조사 내역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과다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예산조정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사업 간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각 내역사업의 집행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 2024년과 동일한 액수의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실태로 미루어 볼 때,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지 않고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에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거나, 다른 내역사업과 혼용하여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시점 및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업무여비 편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업무
여비 예산의 적정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별첨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1. 위원회 기능 및 성격

□ 위원회 구성

- (출범)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 출범('20. 12. 10.)
- (구성) 9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6)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 *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선출 8명(여 4, 야 4)
- (성격)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진실규명 업무 독자적 수행
- (조사기간) 2025. 5. 26.까지(2021. 5. 조사개시 후 3년간, 최대 1년 이내 연장)
 - *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별도(~2025.11.26.까지)

□ 기 능

- 진실규명 조사대상 선정,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진실규명 결정
- 화해를 위한 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진실규명의 범위

[과거사정리법 제2조]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 '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3·15의거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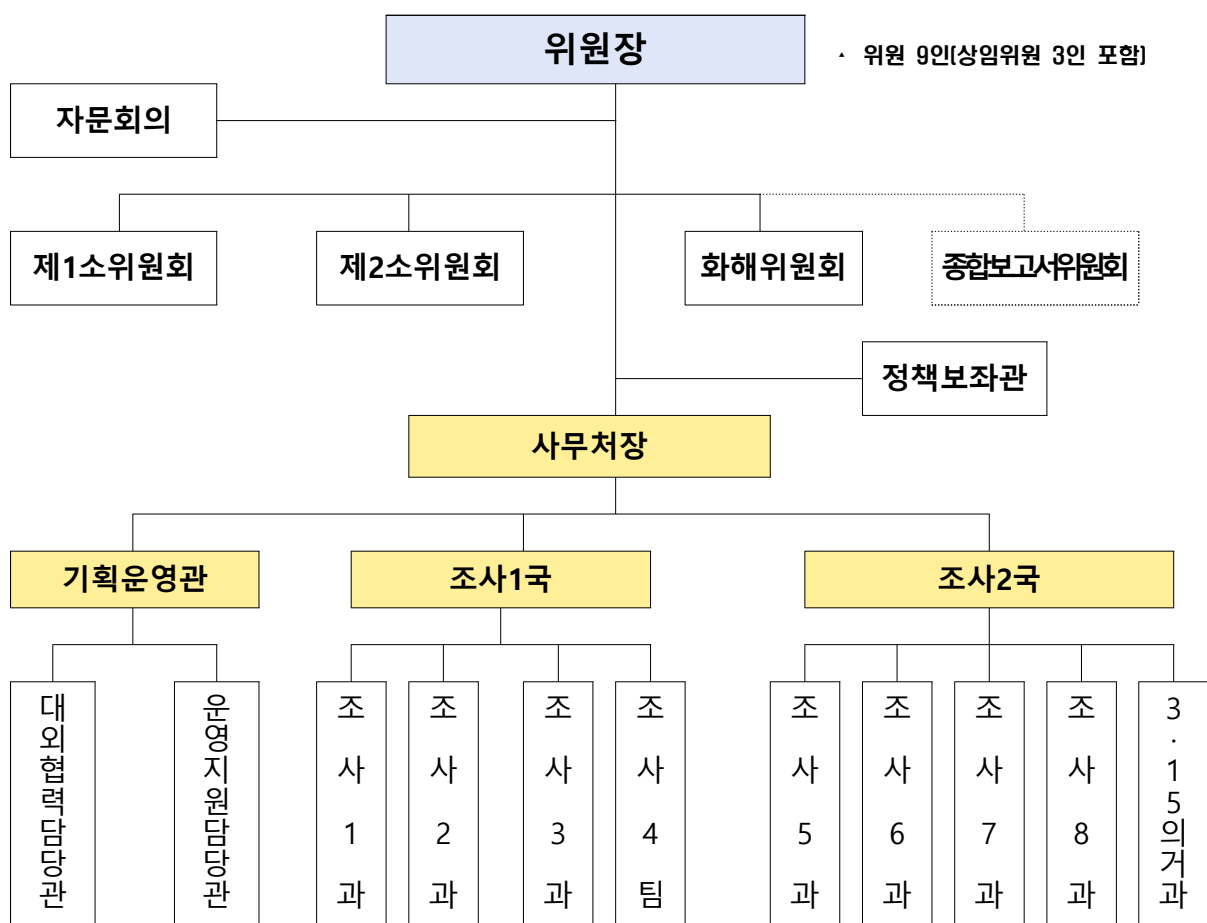
- '60. 3. 15부터 4. 13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60. 3. 15.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진상규명

2. 조직 및 정원

◆ 조직 : 1처 1관 2국 1보좌관, 2담당관 8과 1팀

*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위원회, 자문회의

○ 조직도



○ 인원 현황

(단위: 명, '24. 10. 31. 기준)

계 (총원/현원)	정원 내 (136/135)			정원 외 (91)			
	정무직	별정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전문임기	사무보조
227/226	3/3	78/77	55/55	39	4	25	23

